◎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2024-001호

2024년도 제1차
마약·자살 등 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 기술연구(R&D)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24년도 「마약·자살 등 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 기술연구(R&D)」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일

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장 박수빈

Ⅰ.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'각 과제제안요구서(RFP)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정예정 과제 수는 평가절차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구분	RFP명	지원 규모 (1차 년도)	지원 기간	지원대상/ 과제구성요건	선정 예정 과제 수
1.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	한국형 마약류 사용장애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정신사회치료 프로그램 개발	800백만원 이내/년 (600백만원)	6년 이내 (3+3) (1차 년도는 9개월)	·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· 개발 기술의 사용환경(임상 또는 지역사회), 적용시기(급성기 또는 회복·재활기) 등에 따른 공동수행과제 구성 필수 · 환자 레지스트리 대상자 모집을 위해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필수 ·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(정신의료기관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마약류 사용장애 환자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) 협업 필수 ·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신의학, 예방의학, 의료정보학, 심리학 등 다학제 연구진 구성	1
	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비침습적 의료기기 개발	500백만원 이내/년 (375백만원) 2단계는 연 1,000백만원 이내	5년 이내 (2+3) (1차 년도는 9개월)	·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· 공동과제 구성을 통한 협업연구로 수행하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공동연구기관으로 필수참여 ·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위해 GMP, GCP 확보기관 필수참여 ·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신의학, 예방의학, 의료정보학, 심리학 등 다학제 연구진 구성	2*
	물질중독 고위험군(마약 포함) 선별도구 및 조기개입 기술개발	400백만원 이내/년 (300백만원)	4년 이내 (2+2) (1차 년도는 9개월)	·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·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 청소년·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) 협업 필수 ·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신의학, 예방의학, 의료정보학, 심리학 등 다학제 연구진 구성	1
2. 자살·자해	청소년·청년 자살·자해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생물학적 효과검증	400백만원 이내/년 (300백만원)	4년 이내 (2+2) (1차 년도는 9개월)	·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· 개발 기술의 사용환경(임상·지역사회), 목적(자살·자해) 등에 따른 공동수행과제 구성 필수 ·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 청소년·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) 협업 필수 ·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신의학, 예방의학, 의료정보학, 심리학 등 다학제 연구진 구성	1
	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평가도구 개발 및 장기추적조사연구	800백만원 이내/년 (600백만원)	6년 이내 (3+3) (1차 년도는 9개월)	·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· 추적조사연구의 eCRF 구축, 데이터 표준화, 질관리 등을 위한 공동수행과제 구성 필수 ·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신의학, 예방의학, 의료정보학, 심리학 등 다학제 연구진 구성	1

* 2단계는 상대평가를 통해 1개 과제만 지원 예정

Ⅱ. 신청요건

❑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❍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
- ❍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❍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❍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
- ❍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❍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❍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❍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❍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별로 확인 필요

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**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**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❑ 연구책임자의 자격

❍ 각 신규과제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

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 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업단에 사전문의 바람

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요망

❑ 신청 및 수행제한

○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

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
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-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
○ 연구자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합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주관연구책임자로는 마약·자살 등 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 기술연구(R&D) 사업 전체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수행 가능

- 마약·자살 등 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 기술연구(R&D)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선정된 연구자의 경우, 해당 과제 종료 시까지 마약·자살 등 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 기술연구(R&D) 사업 타 과제의 주관연구 책임자로 지원 불가

Ⅲ. 신청방법

❑ 공고 및 접수처

> 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> ▶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*(https://www.iris.go.kr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> 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 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**

○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사업공고
②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사업공고

○ (접수)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**

❑ 신청 절차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・승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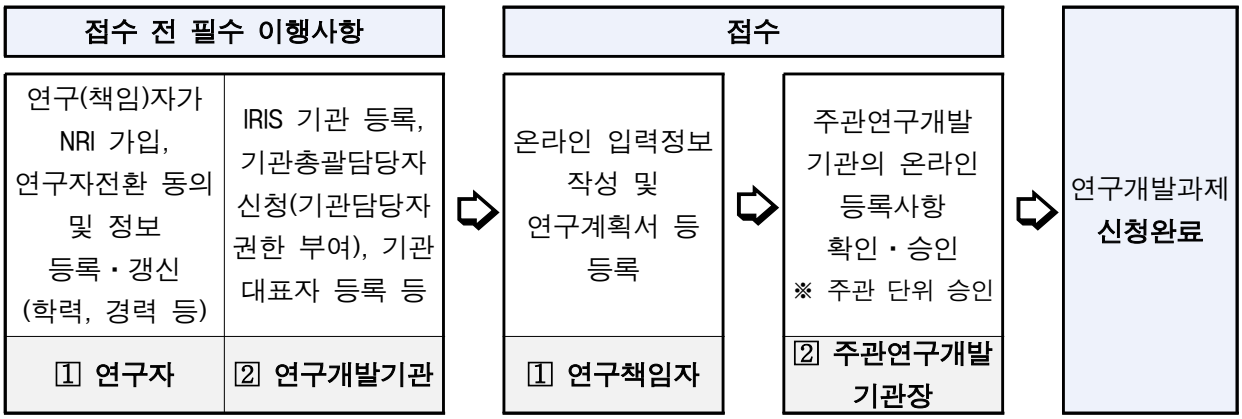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> ▶ **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>
>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 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>
> 1 **(연구자)** ①IRIS 회원가입, ②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※ ① 및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2 **(연구개발기관)**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**IRIS 문의처 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**

❑ 서류제출기한

※ **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**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**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**

※ **신청 마감시간(17:30) 엄수 (마감 기한 연장 불가)**

※ **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**은 **'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www.htdream.kr)' 사업참여-공지사항**에 공지함

※ **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**하며, 마감 시간 임박 시(마감 2일 전부터)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 시간으로부터 **충분한 여유시간**을 가지고 신청 요망

공고단위 (RFP명)		연구책임자 과제신청(전산입력) 마감일	주관연구개발개발기관 검토·승인 마감일
1.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	한국형 마약류 사용장애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정신사회치료프로그램 개발	2024. 3. 6.(수) 17 : 30	2024. 3. 6.(수) 17 : 30
	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비침습적 의료기기 개발		
	물질중독 고위험군(마약포함) 선별도구 및 조기개입 기술개발		
2. 자살 · 자해	청소년·청년 자살·자해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생물학적 효과검증		
	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평가도구 개발 및 장기추적조사연구		

-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**기한 내 기관 미승인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됨**

Ⅳ. 관련 법령 및 규정

❑ **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**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

Ⅴ. 기 타

❑ **연구개발비 산정 기준**

○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-49호, 2023.12.28.)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
❑ 연구시설・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

○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,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를 작성・첨부하여야 함
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・장비가 3천만원 이상, 1억원 미만인 경우는 ‘연구개발과제 평가단’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‘국가연구시설・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에서 심의

❑ **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**

○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❑ **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**

○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, 연구성과 관리・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・기탁하여야 함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
- 사업공고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,
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www.htdream.kr)
- 담당기관 : 정신건강구연구개발사업단

○ 담당자 안내

- 과제 내용(RFP) 안내, 공고 및 평가 관련

구분	공고단위(RFP)	사업내용(RFP)안내, 공고 및 평가 관련 사항	
		담당자	연락처
1.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	한국형 마약류 사용장애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정신사회치료프로그램 개발	박진식	02-2204-1498
	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비침습적 의료기기 개발		
	물질중독 고위험군(마약포함) 선별도구 및 조기개입 기술개발		
2. 자살 · 자해	청소년·청년 자살 · 자해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생물학적 효과검증	임현	02-2204-0138
	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평가도구 개발 및 장기추적조사연구		

- **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1877-2041)**

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~ 18:00